

영등포구의회  
제16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 
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2. 5. 7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116호로 2012년 4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규정을 구체화 하였으며, 2011년 9월에 개정된 법제처 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”에 맞도록 조례의 용어나 표현을 정비 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 명문화(안 제3조 제4항)

- 임기 2년에 연임 할 수 있도록 임기규정 명문화

나. 실무위원회 운영 및 심의안건 구체화(안 제6조)

- 실무위원회의 심의 안건 및 회의소집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

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정비

#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 및 제9조

##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우리구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3조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 규정을 명문화 함.

- 안 제6조에 실무위원회 운영 및 심의안건 구체적으로 명시
  - 실무위원회의 심의 안건
    - ①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
    - ②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
    - ③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·조정
  - 실무위원회 소집 :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
-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통합방위법」에 따라 통합방위대책 및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통합방위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“의장이 위촉하는 기간으로 한다.”에서 “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”로 개정하여 임기를 명확히 규정한 것임.
- 통합방위협의회는 전·평시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한 민·관·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.

# 참 고 자 료

## 1

## 통합방위법

제5조(지역 통합방위협의회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소속으로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시·도 협의회"라 한다)를 두고, 그 의장은 시·도지사가 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으로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, 그 의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 시·도 협의회와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·도 협의회에 한한다.

1.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(이하 "취약지역"이라 한다)의 선정 또는 해제
2. 통합방위 대비책
3.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
4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
5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

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09.5.21]

제9조(통합방위 지원본부) ①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·읍장·면장·동장 소속으로

시·군·구·읍·면·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.

② 시·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·군·구·읍·면·동 통합방위 지원본부(이하 "각 통합방위 지원본부"라 한다)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
2.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
3. 국가방위요소의 육성·지원
4.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
5.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09.5.21]

## 2 통합방위법 시행령

제8조 (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 ① 시·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2.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3. 국가정보원의 관계자
4. 지방검찰청의 검사장·지청장 또는 검사
5.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
6.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
7.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

8. 지방병무관서의 장
9. 교육감 또는 교육장
10. 지방의회 의장
11. 지방소방관서의 장
12. 지역 재향군인회장
13.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② 지역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,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.

③ 지역협의회 업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(이하 "지역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역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
2.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
3.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

④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

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,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⑥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,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
2. 향토예비군,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, 계몽 및 지원 대책
3. 취약지역 대비책

4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

⑦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영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
2. 통합방위작전·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

**제14조 (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)**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·경합동상황실(이하 "합동상황실"이라 한다)로 구성한다.

**제17조 (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)**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(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·군·구·읍·면·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
2.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
3. 지역협의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의 시행